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경북행복재단 –

2023. 상반기.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 처분요구일람표

1.	행사운영비 집행 부적정	(주의)	····· 4
2.	공가 운영 부적정	(시정)	····· 7
3.	축·부의금 사용 부적정	(주의)	····· 9
4.	임원모집 규정 부적정	(통보)	····· 11
5.	징계 감면처분 부적정	(주의)	····· 13
6.	유급휴일 운영 부적정	(통보)	····· 15
7.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 공가 사용에 관한 사항	(통보)	····· 17
8.	업무추진비 과목해소 등 집행 부적정	(주의)	····· 20
9.	무등록 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 22
10.	언론광고 홍보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 23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행사운영비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경북행복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재단법인 경북행복재단 ●●●●●에서는 “경북행복재단-○○○○○○○○ ◒◒◐◐◐”을 0000. 00. 00. ~ 00. 00.에 추진하였다.

행정안전부 「2022년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 예산 세부 집행 요령에 따르면 행사운영비는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등 행사개최에 소요되는 각종 일반수용비, 시설, 장비 임차료, 강사료 등을 집행하는 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식비, 숙박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행사는 출자·출연 기관이 직접 주관하고 예산을 직접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하여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주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 계약 시에는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97호, 2022.1.7.)호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르면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선금지급 의무 지급률[1]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1) 3억원 미만의 용역은 계약금액의 50%

아울러, 선금 지급 시에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하며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과 배분, 정산과 반환청구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선금 지급 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

나아가, 선금은 해당 계약의 노임 지급과 자재 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선금 전액 사용 시 지급된 선금이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한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5호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데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한다.

아울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5호, 제8조에 따르면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의 일반운영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의 100분의 8 이하이며 이윤율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운영비 합의 100분의 10 이하이다.

따라서, 위 관서는 “경북행복재단-○○○○○○○○ ◒◒ ◐◐◐”에서 참석자인 경북 행복재단 직원의 숙박비, 식비를 행사운영비로 사용하지 않았어야 하고 계약상대자인 ㈜▲▲▲◓◓◓◓와 계약 시 일반운영비, 이윤율이 적합하게 내재된 세부 내역을 작성하여야 했으며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했으며 선금 지급비율은 규정된 비율인 70% 이내에서 지급해야 했으며 이에 따른 채권을 확보하고 선금을 모두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징구하는 등 내실있는 정산이 이루어져야 했다.

1. 행사운영비 집행 부적정 관련

그런데 “경북행복재단-○○○○○○○○ ◒◒ ◐◐◐ 계획(안)”(◎◎◎◎◎-000, 0000.00.00.) 세부예산항목에 따르면 운임비 0,000,000원, 숙박비 0,000,000원, 식비 0,000,000원이 행사운영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급금 정산서(0000.00.00.)에 따르면 ㈜▧▧▧◓◓은 선금 00,000,000원을 전액 사용하였는데 이 중 항공료 0,000,000원, 숙박비 0,000,000원, 식비 0,000,000원이 사용됨으로써 규정상 행사운영비로 지급이 불가능한 식비, 숙박비, 항공료 등 00,000,000원이 부당하게 집행되었다.

2. 계약행위 운영 부적정 관련

“◘◘◘◘ 계약 체결(경북행복재단-○○○○○○○○ ◒◒ ◐◐◐)”(◇◇◇◇◇-0000, 0000.00.00)호와 계약서에 따르면 ㈜☆☆◓◓[2]과의 계약금액은 18,900,000원인데 이에 대한 세부 내역은 부존재한다.

0000.00.00. 용역계약 대금 지급 서류에 따르면 위 관서는 계약상대자인 ㈜▽▽▽◓◓의 선금 요청 공문도 없이 계약금액의 100%인 00,000,000원을 채권 확보를 위한 보증서 징구 등의 규정상 필수절차도 없이 선금으로 지급하였다.

선급금 정산서(0000.00.00.)에 따르면 ㈜▽▽▽◓◓은 선금 00,000,000원을 전액 사용하였는데 숙박비는 0,000,000원, 식비는 0,000,000원이 사용되었다.

아울러 선급금 정산서에 따르면 규정상 계약상대자가 취득할 수 있는 일반운영비와 이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본 정산서대로라면 ㈜▽▽▽◓◓은 아무런 이윤도 없이 본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이러한 정산 내용을 신뢰하기 힘들다.

나아가, 선급금 정산서에는 실제 집행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가 부존재하여 계약상대자가 충실히 계약을 이행했는지, 선금을 계약에 맞게 집행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게 계약 행위를 수행하였다.

---

2) 계약서에는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후 서류부터는 ㈜▽▽▽◓◓으로 기재되어 있음.

조치할 사항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는**

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② □□□은 「인사규정」 제43조의1에 따라 ■■■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공가운영 부적정
소 관 청	경북행복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재단법인 경북행복재단에는 0000, 0000년도 코로나-19에 따른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였다.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442(0000.00.0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첨부 복무지침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는 “병가”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인 또는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격리자 등이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복무규정」 제2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2항, 제10항, 제12항, 경북행복재단 △△△△△-0000(0000.00.00.) “경북행복재단 복무지침”에 따르면 여성직원은 임신기간 중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특별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시 배우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가 있을 경우 2일 이내(2자녀 이상 3일)에서 유급으로 가족돌봄 특별휴가를 사용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관서의 임직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이 되었을 경우 병가처리를 하여 자가격리를 하여야 하고 격리 치료 후 출근 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임신한 임직원의 임신검진휴가와 가족돌봄 휴가는 특별휴가로 사용해야 했다.

그러나, 위 관서의 임직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임신검진 및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를 공가로 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병가로 처리했으면 받지 못하였을 병가 미활용에 따른 연가 가산 혜택을 받음으로써 부당하게 연가를 1일씩 더 취득하고 나아가 연가보상비로 인한 예산 사용이 불필요하게 증대될 수 있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병가 미활용을 이유로 가산되었던 연가를 취소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축의·부의금 사용 부적정**
소 관 청	경북행복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재단법인 경북행복재단에는 다수의 건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 등을 전달하였다.

재단법인 경북행복재단 정관 제2조에 따르면 본 재단의 설립 목적은 도민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복지 보건서비스의 전문성, 책임성, 생산성, 통합성을 지속적으로 증진하여 도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 2022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2022년 까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2023년 부터)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축의·부의금품의 집행 한도액은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축의·부의금품을 대신하여 화분 또는 화환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1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는 없다.

아울러 축의·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한데 유관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3]을 의미한다.

3) 공공기관이란 공익목적으로 설립되고, 상시 근무하는 인력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상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관을 의미**하며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 협의회 등 관할 유관단체를 의미한다. 다만 유관단체의 경우에는 유관단체의 대표자 1인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나아가, 업무추진비 집행기관이 담당하는 업무 관련 범위내에서 현재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고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업무관계가 발생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규정상 집행이 불가능한 자에게 업무추진비로 축의·부의금품 00건을 제공하여 0,000,000원의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는**

축·부의금 등 업무추진비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통 보

제 목	**임원 모집 규정 부적정**
소 관 청	경북행복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경북행복재단은 현재 대표이사 및 이사장을 포함하여 00명의 이사가 있으며 00명의 감사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제12507호, 2014.9.25., 최초 제정) 제9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2021.1.29.) Ⅱ. 임원의 인사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직위에 대해 직위별로 그 역할과 책임, 직무수행요건을 정관 또는 자체 규정으로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하고,

임원 직위별 자격 요건은 직무수행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관 또는 자체 인사규정 등에 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임원의 공개모집 원칙 및 그 방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관 또는 내부 인사규정 등에 명시토록 한다.

「재단법인 경북행복재단 정관」 제17조 제1항 및 제4호에 따르면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

또한, 선임직 이사는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법인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선임한다.

따라서, 위 관서는 「지방출자출연법」이 최초 제정된 이후부터는 임원인 이사와 감사를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여야 했으며 직무수행요건과 자격요건을 정관 혹은 인사규정에 정했어야 했다.

하지만 위 관서는 법 제정 이후 총 00번의 정관 개정이 있었지만 이러한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지 않은 채 이사와 감사를 공개모집 하지 않고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0분의 0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선임하였고,

임원 직위에 대한 직무수행요건과 임원 직위별 자격 요건을 정관 또는 자체 규정으로 정하지 않은 채 이사 선임 과정을 처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재단 운영을 저해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는 임원 모집 규정을 정관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징계 감면 처분 부적정**

소 관 청 경북행복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경북행복재단은 ◉◉◉◉◉ ◈◈◈가 외부 강의를 하면서 청탁금지법을 비롯한 다수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감사하여 ◍◍으로 징계처분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북행복재단 인사위원회가 0000. 00. 00. 개최하였다.

「인사규정」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징계의결 또는 재심의결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집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관서는 인사위원회 징계 의결 결과에 대하여 결과대로 처분하거나 재심의를 요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여야 했다.

“▨▨▨▨▨▨ ▣▣”(◑◑◑◑◑-000호, 0000.00.00에 따르면 ◩◩◩◩◩ ◈◈◈◈◈ ◆◆◆를 대상자로 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임직원행동강령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으로 징계 처분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였다.

상기 징계 처분 요구에 따라 사무처장 ▨▨▨를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가 0000.00.00. 00:00에 경북행복재단 회의실에서 열렸다.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는 경상북도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가 감경되어 ◍◍◍◍로 의결 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 담당자 ◘◘◘이 0000.00.00. 보고하고 대표이사가 최종 결재한 “경북행복재단 ◕◕◕◕◕ ◘◘◘◘◘◘”(◕◕◕◕◕-000호, 0000.00.00.)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결과는 ◇◇◇◇로 기재되어 있으며 표지에 “◔◔◔◔ ◒◒◒◒ ◈◈◈◈◈ ◒◒◒◒.”이라는 내용의 대표이사의 자필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그 후 담당자 ○○○이 기안한 “◍◍◍◍◍ ◎◎”(◐◐◐◐◐-000호, 0000.00.00.)에 따르면 ◔◔◔는 00월 00일 자로 ◘◘◘◘의 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위 관서는 「인사규정」 제48조 따른 재심의 요구와 그에 따른 재심의결 절차도 없이 당초 0000.00.00. 열렸던 인사위원회 징계 의결 결과인 ◕◕◕◕을 아무런 근거 규정도 없이 ◧◧◧◧로 바꾼 뒤 인사발령을 하여 인사행정을 규정대로 운영해야 할 의무를 방기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는**

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② ▨▨▨과 ◈◈◈은 「인사규정」 제41조에 따라 **◆◆◆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통 보

제 목 **유급휴일 운영 부적정**

소 관 청 경북행복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재단법인 경북행복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에서는 자체「복무규정」과「취업규칙」에 따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제5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추석,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등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행정안전부)에 따르면「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 외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휴가(경조사휴가, 출산휴가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해당하는 항목은 제외)를 운영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에서는 법령에서 정하여 유급으로 보장하는 공휴일 외에 이와 유사한 유급휴일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재단에서는 자체 「취업규칙」제81조에 직원의 유급휴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 외에 '재단에서 임시로 정하는 날'을 추가한 후 「복무규정」 제18조에 재단 창립기념일을 휴일로 지정하여 부적정하게 유급휴일 제도를 운영하였다.

그 결과, 0000년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사용한 소속직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비 적용 시, 합계금액 0000천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는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하시고, 재단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에서 제외하도록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개정 등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경 상 북 도

통 보

제 목	◈◈◈◈◈ 공가 사용에 관한 사항
소 관 청	경북행복재단
관 계 부 서	◇◇◇◇◇, ◈◈◈◈◈
내 용	

재단법인 경북행복재단(이하 '재단'이라 함) 소속 팀인 ◈◈◈◈◈에서는 자체 「복무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 건강검진 휴가 사용에 관한 사항

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 제4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재단의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한시조직을 둘 수 있고,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하며, 별도의 한시조직에 대하여 업무 및 복무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재단의 「복무규정」 제28조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소속직원이 '1.「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국회·법원·검찰 그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6.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7. 국가 또는 관련 기관의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에서는 재단의 한시정원 부서인 ◈◈◈◈◈(존속기한 0000.00.00.)의 존속기한 까지는 재단의 「복무규정」을 준수토록 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에는 공가를 허가토록 지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재단에서는 ◈◈◈◈◈이 자체 「복무규정」제28조에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계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의 소환이 있을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의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공가를 허가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소속직원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공가를 허가하지 않고 있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2. 공가 사용 부적정

재단 「취업규칙」제6조, 제8조에 의하면 직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함부로 업무수행 장소를 이탈하거나 재단 내에 출입 시에는 소정의 통용문을 사용하여야 하며, 업무시간 외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하여서는 아니되며,

◈◈◈◈◈ 「복무규정」제11조에 따르면 직원은 ◈◈◈◈◈ 관외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출장을 해야 할 경우 출장신청 후 반드시 상관의 명을 받아 출장해야 하고, 이러한 출장의 종류는 시내출장, 시외출장, 국외출장으로 구분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재단 「복무규정」제27조에는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소속직원에게 연 60일의 범위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 「복무규정」제27조에도 감염병에 걸려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에게 연 6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에서는 소속직원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수강 등 ◈◈◈◈◈ 관외의 업무처리를 할 경우 출장신청을 받은 후 출장을 허가하고, 소속직원이 '코로나19확진 판정 격리조치'로 휴가를 사용할 경우 병가를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에서는 출장이나 병가를 허가해야하는 직원에게 공가를 허가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는

출장이나 병가 등을 허가해야 할 소속직원에게 무분별하게 공가를 허가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소속직원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공가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소속부서 ◈◈◈◈◈의 「복무규정」개정 등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업무추진비 과목해소 등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경북행복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재단법인 경북행복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에서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 집행 기준」 등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 Ⅱ. 주요항목별 집행지침 '5 기타'에 따르면 본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99호, 제172호[4])에 의하면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하여야 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6.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에 의하면 본청 상근직원 및 차하급 기관 대표자에게 연말, 설, 추석 등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에 대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Ⅲ. 주요 항목별 편성기준 '2. 경비'에는 직원

4)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172호, 시행 2021.1.1.) 부칙에 따라 2021년 1월 1일 부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 적용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체육대회 참가자 격려, 생일 기념품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원가산업무비로 집행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에서는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집행하려면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한 후 직원명절 선물을 구입할 때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고, 체육대회 참가자 격려 및 생일 기념품 등을 구입할 때에는 정원가산업무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재단에서는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연간 집행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예산비목별 집행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예산집행 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무등록 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

소 관 청 경북행복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재단법인 경북행복재단에서는 재단 홍보와 재단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재단 로고 및 명칭이 보이도록 건물 외벽에 LED 사인물을 설치하였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기공사업법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 제1항에 의하면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전기 배선기구 제외)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북행복재단에서는 전기 배선기구가 포함된 외부 사인물 설치를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하였다.

[표] 외부 사인물 수의계약 내역

(단위 : 천원)

계 약 일 자	계 약 업 체	계 약 명	계 약 금 액
0000.00.00.	◇◇◇◇◇◇	◈◈ ◈◈ ▨▨▨▨ ▩▩▩▩	0,000

조치할 사항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언론광고 홍보예산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경북행복재단

관 계 부 서 ▨▨▨▨▨, ■■■■■

내 용

재단법인 경북행복재단에서는 주요사업에 대한 홍보와 재단 인지도 향상을 위해 동영상 송출 및 신문 광고를 하고 있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 제5조(광고의뢰)에 의하면 정부기관 등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소요예산, 내용, 광고물 제작 여부 등 정부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부광고 업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제5조(광고의뢰)에 의하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광고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광고의 규격, 내용(광고문안 첨부), 소요 예산, 희망매체 및 그 밖에 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북행복재단에서는 0000년부터 0000년까지 동영상 송출 및 신문 광고

00건에 대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요청하지 않고, 언론사 등에 00,000천원을 직접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 언론사에 광고를 게재할 경우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여 집행하시기 바라며, 업무연찬을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